

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4. 12. 23.>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
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미세먼지 (PM-10)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초미세먼지 (PM-2.5) ($\mu\text{g}/\text{m}^3$)	이산화 탄소 (ppm)	폼알데 하이드 ($\mu\text{g}/\text{m}^3$)	총부유 세균 (CFU/ m^3)	일산화탄소 (ppm)	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 객자동차터미널의 대 합실, 항만시설 중 대 합실, 공항시설 중 여 객터미널, 장례식장, 영 화상영관, 전시시설,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 장업의 영업시설	100 이하	50 이하	1,000 이하	100 이하	-	10 이하	
나. 도서관, 박물관, 미술 관, 대규모점포, 학원		40 이하					
다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 집, 실내 어린이놀이시 설	75 이하	35 이하			80 이하		800 이하
라. 실내주차장	200 이하	-		100 이하	-	25 이하	
마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, 들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 는 건축물	200 이하	-	-	-	-	-	

비고

1.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2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(PM-10)의 농도가 $200\mu\text{g}/\text{m}^3$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.
 - 가.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·배기관(급·배기구를 포함한다)
 - 나. 중앙집중식 냉·난방시설의 급·배기구
 - 다.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
 - 라. 화장실용 배기관
 - 마. 조리용 배기관